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8
----------	-----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5일

발 의 자 : 오중균 의원 외 17명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일부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정비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안 제8조의2)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159조항을 제176조항으로 변경(안 제7조)

다.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명칭을 “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8조 제2항제5호, 안 제10조의2제4호)

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추가로 별표 1 개정(안 별표1)

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0년 개정이후 정비가 없어 품목신설 및 가격조정 등 별표 6 개정(안 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추가)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마.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21. 08. 26 ~ 2021. 09. 01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첨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사·작업등”을 “공사·작업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구간”을 “자치구 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를 “명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구재정”을 “구 재정”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

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호 중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각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하고”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성북구”를 “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폐기물 처리업자의”를 “폐기물처리업자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규격봉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성북구”를 “구”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을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 및 변경 사항을”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6(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폐기물”이란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u>공사·작업</u>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u>공사·작업</u> 등----- ----- ----- -----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구 청장은 2개 이상의 구에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 ----- ----- ----- 「지방자치법」 제176조----- ----- -----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	② -----

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환경미화원 인원, 임금에 관한 사항

6.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제작비 및 처리비(반입 수수료) 납부방법 및 구재정 손실 방지 사전 차단 대책(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명시

----- 자치구 간-----

-----.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명시하여 -----
--.

1. ~ 6. (현행과 같음)

6. 공무원-----

6. -----

----- 구 재정-----

7. ~ 10. (생 략)

<신 설>

7.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자는 법 제14조의5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
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

	<u>한 사전 작업</u> <u>나. 가로청소작업</u> <u>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u> <u>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u> <u>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u> <u>바.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u> <u>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u>
<u>제8조의2·제8조의3 (생략)</u>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21조제	<u>제8조의3·제8조의4 (현행 제8조의2 및 제8조의3과 같음)</u>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등) ① ----- ----- ----- -----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21조-

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2(적환장 관리기준) 1.(생략)

1. ~ 3. (생략)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휴게시설

5. (생략)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작성하여 -----

-----.

제10조2(적환장 관리기준) 1.(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
-----)의 대기·휴게시설

5. (현행과 같음)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직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청소대행업자 또는 성북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운반하기가 쉬운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2. ~ 5. (생략)

② (생략)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 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협조 등) ① -----

-----.

1. -----

----- 구 -----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

----- 폐기물처리업자의 -----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종량제 시행) ① (생 략)	제16조(종량제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u>관급규격 봉투</u> (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따른다.	② ----- ----- ----- <u>규격봉투</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6조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u>성북구</u>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1조(가산금 등) ① ----- ----- ----- <u>구</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조제목 개정 2015.5.14.) ① (생 략)	제34조(과태료) (조제목 개정 2015.5.14.)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u>	<u><삭 제></u>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	③ ----- -----

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u>별지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u>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u>과태료 부</u> <u>과취소 및 변경 사항을</u> ----- ----- -----.
--	--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갑,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 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품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건조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음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 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 주류 및 음료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품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수병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	• 기타병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류, 알루미늄)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 류	• PET병 (유색)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폐비닐 장판 • 폐스티로폼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품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수집금지 품목 플라스틱 중 철사, 강철 등의 재질 혼합 부착 물품 (예 : 플라스틱 자전거, 유모차, 옷걸이 등) ※ 단 철사, 강철 등이 제거된 상태는 가능 - P·V·C소재류, 호스류 (세탁기에 부착된 호스 등) - 폐유 용기류, 세제류 (타 물질과 혼합, 압축된 물건) - 이물질 및 부착상호 등을 제거 후 배출하거나 투명 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이물질을 물로 행구어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완충용 스티로폼은 제조자(판매자)가 회수

		※ 컵라면용기, 1회용 용기,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6. 투명페트병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비해당 품목 : 양념류,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식품포장 투명용기, 유색페트병 등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7. 의류	· 면류, 나일론 화학섬유 등의 의류 일체	- 젖지 않게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 ※ 단, 한복, 이불, 시트커버, 카펫류는 제외
8. 비닐류 (PE)	· 폐비닐봉투	- 날장을 몇 번 접어 50매 단위로 묶거나 봉투에 담아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는 봉투는 털거나 물로 씻어 건조 후 배출
9.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규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물로 행구어 배출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이외의 비닐,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 병뚜껑 등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6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연번	종별	품목	규격	부과금액
1	가구	장롱	가로 120cm 이상	17,000
			가로 90cm 이상 ~ 가로 120cm 미만	12,000
			가로 90cm 미만	8,000
2		침대	1인용(매트리스, 프레임)	12,000
			1인용 매트리스 (라텍스,토퍼포함)	7,000
			2인용(매트리스, 프레임)	18,000
			2인용 매트리스 (라텍스,토퍼포함)	10,000
			침대머리판	3,000
			접이식 1인용	8,000
			접이식 2인용	11,000
			유아용 침대	4,000
			어린이2층침대(사다리포함)	17,000
			사다리	2,000
			돌침대 2인용	30,000
			돌침대 1인용	24,000
			3	의자
목재의자		2,000		
철재의자		2,000		
바퀴달린 의자 대형		6,000		
바퀴달린 의자 소형		3,000		
좌식의자		1,000		
안마의자		12,000		
4		쇼파	1인	4,000
			2인	8,000
			3인	11,000
			4인 이상	13,000
			스툴 (등받이X) [개당]	3,000
			유아용 (1인용 당)	2,000
5		책상	양수	7,000
			단수	4,000
			독서실책상(책상+책꽂이)	7,000
			h형 (책장포함) [유리별도]	11,000
6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3,000
7		식탁	4인용 초과	5,000

			4인용 이하	3,000
8		대리석 식탁	5인용 이상	11,000
			4인용 이하	9,000
9		탁자	10인용 이상	9,000
			10인용 미만	6,000
			응접용(거실)	2,000
10		협탁	2단 이하	2,000
11		밥상	4인 이상	2,000
			4인 미만	1,000
12		응접세트	장의자	7,000
			의자	4,000
13		화장대		4,000
14		책장(장식장)	180cm 이상	10,000
			180cm 미만	6,000
15		진열대	100cm 이상	6,000
			100cm 미만	4,000
16		책꽂이	3단 이상	3,000
			3단 미만	2,000
17		신발장	높이 120cm 이상	6,000
			높이 120cm 미만	3,000
18		문갑		5,000
19		문짚		2,000
20		재봉틀(반침대)		3,000
21		썸크대	60cm당	5,000
22		비키니옷장	비키니옷장(비닐옷장)	3,000
23		옷걸이	스탠드형	2,000
24		유모차	1인용	2,000
		유모차	2인용	4,000
25		유아용 놀이기구	5kg당	1,000
26		유아미끄럼틀		6,000
27		유아자동차		2,000
28		유아용 주방썸크대		3,000
29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	2,000
30		인형 (대형)		2,000
31		쿠션, 베게, 방석 (개당솜포함)	1인용	1,000
			2인용	2,000
32		보행기		3,000
33	생활	전기장판	2인용 이상	3,000

		1인용	2,000
		옥장판 2인용	7,000
		옥장판 1인용	4,000
34	카펫·장판·돗자리	3.3㎡ (1평)당	2,000
35	이불	1채당	2,000
36	욕조	일반용	8,000
	욕조	유아용	3,000
37	변기		6,000
38	비데		1,000
39	빨래건조대		2,000
40	세면대	세면대	3,000
		긴세면대	6,000
41	쌀통		3,000
42	고무통	지름 1m 초과	5,000
		지름 50cm 이상 지름 1m 이하	3,000
		지름 50cm 미만	2,000
43	항아리		2,000
44	거울·액자·유리	높이 100cm 초과	3,000
		높이 50cm 초과 ~ 100cm 이하	2,000
		높이 50cm 이하	1,000
45	어항	1m X 0.6m 이상	7,000
		1m X 0.6m 미만	5,000
46	화환		3,000
47	화분	높이50cm당	2,000
		높이50cm미만	1,000
48	시계	대형	2,000
		소형, 벽걸이	0
49	쓰레기통	사무실옥외용	2,000
		가정용	1,000
50	가방	장축 50cm 이상(골프,낚시가방)	4,000
		장축 50cm 미만	3,000
51	커튼	1m당	1,000
52	커튼봉		1,000
53	블라인드	3.3㎡ (1평)당	1,000
54	킥보드	킥보드	2,000
55	자전거	성인용 (두발)	3,000
		아동용 (두발)	3,000
		아동용 (세발)	2,000
56	선풍기	업소용(대형)	3,000
		가정용	0

57	가전 제품	텔레비전	107cm 이상	6,000
			107cm 미만	4,000
58		오디오	높이 1m 이상	5,000
59		오락기	높이 1m 이상	5,000
60		복사기	높이 1m 이상	11,000
61		자동판매기	소형, 커피 판매기 등	6,000
			음료수, 담배 판매기 등	16,000
62		보일러	16kcal/h 초과	11,000
			16kcal/h 이하	9,000
63		냉방기 (온풍기,공기청정기)	264㎡ 이상	12,000
			66㎡ 이상	7,000
			66㎡ 미만	5,000
64		냉장고	업 소 용	20,000
			500 L 이상	11,000
			300 L 이상	9,000
			300 L 미만	6,000
65		세탁기	6kg 초과	5,000
			6kg 미만	4,000
67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6,000
68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6,000
69		가스레인지		2,000
70		렌지후드		2,000
71		냉온정수기	높이 1m 이상	6,000
72		휠체어	수동	3,000
			전동	11,000
73		켓타워	높이1.5m이상	6,000
			높이 60cm이상 1.5m미만	4,000
			높이 60cm미만	3,000
74		화일캐비닛	4단이상	5,000
			3단이하	3,000
		캐비닛		6,000
75	파티션	1㎡당	2,000	
76	텐트	5인용 이상	4,000	
		4인용 이하	3,000	
77	울겐		6,000	
78	피아노		20,000	
79	악기 (목재)	5kg 당	2,000	
80	라켓	배드민턴 라켓	1,000	
		테니스 라켓	1,000	
81	운동기구	싸이클	7,000	

		런닝머신	15,000
		스텝퍼	4,000
		윗몸일으키기기구	6,000
82	바둑판	두께 6cm 미만	1,000
		두께 6cm 이상	2,000
83	병풍	1폭당	500
84	마네킹		4,000
85	아이스박스		2,000
86	타이어 (자가용)	대(110cm 이상)	10,000
		중(60cm 이상)	6,000
		소(60cm 미만)	3,000
87	목재·플라스틱류	5kg당	1,000
88	물탱크	15인용 이상	15,000
		15인용 미만	10,000
89	태양광 패널	20kg 기준	7,000
90	세단기		4,000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품목수수료 제외 품목

품목	규격	품목	규격
DVD		스탠드	소형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1m 미만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	에어프라이기	1m 미만
가습기		앰프	1m 미만
게임기(가정용)		오디오 세트(소형)	1m 미만
공기청정기	1m 미만	오디오 스피커	1m 미만
냉풍기	1m 미만	재봉틀(경량)	1m 미만
노트북		전기밥솥	
녹즙기		전기온수기	1m 미만
다리미		전기프라이팬	가정용
라디오	1m 미만	전기히터	
모뎀		전자레인지	
믹서기		전화기	

반신욕기	1m 미만	정수기	언더싱크 정수기불가
발마사지기		젓병소독기	1m 미만
벽걸이에어컨	1m 미만	족욕기	
벽걸이에어컨 (실외기포함)	1m 미만	청소기	1m 미만
보온밥솥		카세트 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	
복합기	1m 미만	커피포트	
비디오		컴퓨터	본체/모니터/ 키보드
선풍기	가정용	탈수기	1m 미만
소형냉장고	1m 미만	토스터	
소형세탁기	1m 미만	팩시밀리	1m 미만
스캐너		프린터	
오락기	1m 미만	헤어드라이기	

※ 소형폐가전(높이1m미만)은 무상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6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형폐기물 중 일부 품목의 수수료 조정

- 장롱 및 침대 등 일부 품목의 2021년 1월 ~ 5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조정 전·후의 세입액 변동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품목 수수료 조정에 따른 세입 증감액 : 24,726천원 감소

- 세입 증가액 : 87,650천원

(단위: 천원)

종별 \ 조정	조정 전	조정 후	비 고 (차 액)
가 구	309,522	355,160	45,638
생활용품	75,739	111,923	36,184
가전제품	6,419	12,247	5,828
합 계	391,680	479,330	87,650

※ 조정 대상(3종 12개 품목) : 가구 7품목, 생활용품 3품목, 가전제품 2품목

- 세입 감소액 : 112,376천원

(단위: 천원)

종별 \ 조정	조정 전	조정 후	비 고 (차 액)
가 구	627,808	515,432	△112,376
합 계	627,808	515,432	△112,376

※ 조정 대상(2종 2개품목) : 가구 2품목

4. 재원조달방안

- 대형폐기물 품목 신설 및 세분화를 통해 추가적 품목 수수료 세입 조치

5. 덧붙이는 의견

- 세입감소 대상 품목(장롱,침대) 수수료는 타 자치구 대비 높은 수수료로 지속 적 수수료 조정 민원이 발생하는 품목

6. 작성자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장 박홍진